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트장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효력발생일 : 2015. 7. 17.

□ 정정 사유

(1) 클래스 추가 : S, Cp, Cp-E, Cp2, Cp2-F, S-P

(2) 다른 자투자신탁 변경 사항 반영

□ 정정 내용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b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S : B5480</u> <u>Cp : B5481</u> <u>Cp-E : B5482</u> <u>Cp2 : B5483</u> <u>Cp2-F : B5484</u> <u>S-P : B5485</u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추가	<u>S : B5480</u> <u>Cp : B5481</u> <u>Cp-E : B5482</u> <u>Cp2 : B5483</u> <u>Cp2-F : B5484</u> <u>S-P : B5485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기재	<u>2014.08.30 : 일괄신고서 효</u> <u>력발생</u> <u>2014.09.03 : 투자신탁 최초</u> <u>설정</u> <u>2015.07.17 : 클래스 추가(S,</u> <u>Cp, Cp-E, Cp2, Cp2-F, S-P)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5. 2. 28.	<u>2015. 6. 30.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클래스 추가	<u>S클래스(펀드코드 : B5480) 집</u> <u>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</u> <u>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영금</u>

		<p> <u>용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  <u>Cp클래스(펀드코드 : B5481)</u>  <u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 <u>Cp-E클래스(펀드코드: B5482)</u>  <u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  <u>Cp2클래스(펀드코드: B5483)</u> 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  <u>Cp2-F클래스(펀드코드 : B5484)</u>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 <u>S-P클래스(펀드코드 : B5485)</u> 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</p>
--	--	---

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</p>	<p>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변경 내용 반영</p>	<p>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펀드 [채권혼합] 명칭 변경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2) 종류별 가입자격</p>	<p>클래스 추가</p>	<p>⑩ S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 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 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 한 ⑪ Cp클래스 :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⑫ Cp-E클래스 :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 자자 ⑬ Cp2클래스 :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 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⑭ Cp2-F클래스 : 퇴직연금 집 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⑮ S-P클래스 : 집합투자증권 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 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</p>

		<u>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3) 환매수수료	클래스 추가에 따른 환매수수료 기재	<u>A, Ae, C1, C2, C3, C4, Ce, W, I, S :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,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30% Cp,Cp-E, Cp2, Cp2-F, S-P : 환매수수료 없음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클래스 추가	<u>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 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클래스 추가	<u>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 기 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 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 는 보수 및 비용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기재	<u>트러스트장기고배당40증권자투 자신탁[채권혼합]의 클래스 추가 내용 반영]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클래스 추가	<u>클래스 추가에 따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 기재</u>